

주의!

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!

# 잘못된 마스크 착용, 안돼요!



① 코가 노출되는  
마스크 착용

**코와 입을 통해**  
자신과 타인에게  
바이러스가  
다 들어가요!



② 턱에 걸치는  
마스크 착용



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

## 코로나19

###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“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”

- ❶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,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
- ❷ 마스크로 입·코를 완전히 가려서,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
- ❸ 마스크 안에 수건,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
- ❹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 
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
- ❺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,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



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

## 마스크,

### 가장 쉽고 확실한

### 코로나19 예방 백신



## 마스크,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!

### 실내

마스크 상시 착용

### 실외

❶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 
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
❷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

\*별도로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,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 
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## 마스크,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!

### 실내

집·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,  
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는 경우

### 실외

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 
(조깅, 공원산책 등)

### 기타

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행동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 
경우 (음식섭취, 수영·목욕, 세수·양치, 공연, 운동경기 등)

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,  
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 
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.  
마스크 한 장의 힘을 믿습니다!

#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

##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

### • 법적근거

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
### • 행정명령기간

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### • 과태료 부과

계도기간 1개월(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

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
### • 과태료 금액

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
### •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

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

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벨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
### •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

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

## 과태료 부과 장소

※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,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자체별 추가가능(관할 자자체의 행정명령 확인)

### • 다중이용시설 등

※ 거리두기 조치변동 시 조정가능  
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 
중점·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### • 대중교통

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

### • 집회·시위장

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### • 의료기관·약국

의료기관·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### • 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

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(운영자)·종사자

### • 종교시설

종교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### • 실내 스포츠경기장

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### • 고위험 사업장

고위험 사업장(클센터, 유통물류센터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### • 자자체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

자자체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##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

###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###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
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

사진 촬영(행사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
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

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예외  
상황